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
----------	---

제출년월일 : 2002. 7. 15.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개정이유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와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개관하는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직제의 신설 등 회관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직제운영 근거를 모범에 맞추어 개정함(안 제1조)

나. 사업소에는 사업소장을 두되, 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조제2항)

다. 사업소(기관)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등 을숙도문화회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1항및제2항)

라. 문화회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와 소속직원을 통할하도록 하고, 관장의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5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3

나. 입법예고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2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105조”라 하며, “직속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라 한다.

제2조제2항중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을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3호중 “호적,병무”를 “호적”으로 한다.

제4장제11조 내지 제13조를 제5장제14조 내지 제16조로 하며, 제4장제11조내지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11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을속도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문화회관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51-14번지에 둔다

제12조(관장) 문화회관에는 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업무) 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정보 중심센터의 기능수행
2. 구민의 취미생활과 정서함양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및 공연에 관한 사항
4. 회관, 부속시설 및 주변지역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3호및제4호를 각각 제4호및제5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 사업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 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5조 ----- ----- ----- ----- 직속기관, 사업소 ----- ----- -----.</p>
<p>제2조(국장, 실·과장의 직급등) ① (생략)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사부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국장, 실·과장의 직급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 사업소의 장, ----- -----.</p>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2. (생략) 13. 민원행정, 호적, 병무, 문서,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p>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현행과 같음) ② ----- 1. ~ 12.(현행과 같음) 13. -----,호적,----- -----</p>
<p><신 설></p>	<p>제4장 사업소 제11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을속도문화 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문화회관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51-14번지에 둔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2조(관장) 문화회관에는 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신 설〉</p>	<p>제13조(소관업무) 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정보 중심 센터의 기능수행 2. 구민의 취미생활과 정서함양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및 공연에 관한 사항 4. 회관, 부속시설 및 주변지역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p>제4장 동</p>	<p>제5장 동</p>
<p>제11조내지제13조 (생략)</p>	<p>제14조내지제16조 (현행과 같음)</p>